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487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3월 4일
제안자 : 도시계획균형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최기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김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18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아이수루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1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28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상정해 각각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수적인 한국의 언어 및 문화, 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

- 다문화 아동·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 안정적 사회적응을 도모하고,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서울시의 포용성과 사회 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중언어 교육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
-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한국어 및 한국사회·문화 이해 교육을 규정함

(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2항제3호)

나. 한국어 및 한국사회·문화 이해 교육 수료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(안 제7조제5항 및 제7조제6항)

다.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함 (안 제7조의2제1항제2호)

라.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부모에대한 부모교육 지원 사업을 규정함 (안 제7조의3)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·문화 이해 교육

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대한 한국어 교육의 실시,”를 “대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·문화 이해 교육

⑤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
⑥ 제5항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교육의 수료 조건, 절차, 지급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

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3(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등의 지원)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부모가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고,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사회적응을 위한 행정 및 생활 교육
2.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
3.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
4. 예비부모교육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지원의 내용 및 범위) ① 외국 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3. ~ 12. (생략)</p> <p>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3. <u>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실시, 직업교육·훈련 및 일자리 연계</u></p> <p>4. ~ 11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지원의 내용 및 범위) ① 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·문화 이해 교육</u></p> <p>4. ~ 13. (현행 제3호부터 제12 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·문화 이해 교육</u></p> <p>4. ----- 대 한 -----</p> <p>5. ~ 12. (현행 제4호부터 제11 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 민자 등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 3호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 인센티브 를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<u>제5항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교육의 수료 조건, 절차, 지급 기</u></p>

제7조의2(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,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<신설>

2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<신설>

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의2(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결혼이민자 등인 부모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

3. ~ 5. (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3(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등의 지원)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부모가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고,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사회적응을 위한 행정 및 생활 교육

2.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

3.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

4. 예비부모교육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